

## 새로운 접촉지대의 모색,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을 중심으로

이우영\*\*·남보라\*\*\*

2008년 북한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0년 만에 남과 북은 ‘씨름’을 공동 등재하였다. ‘아리랑’과 ‘조선민요 <아리랑>’, ‘김치와 김장문화’와 ‘김치담그기풍습’은 ‘씨름’처럼 유사성이 매우 크지만 남과 북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었다. 국제사회에는 남과 북이 경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씨름의 공동등재를 통해서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함께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남과 북의 새로운 ‘접촉지대’ 모색에 앞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북한에 끼친 영향과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 확인하였다. 또한, 2015년과 2017년에 등재를 위해 제출한 씨름 관련 서류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남과 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다양한 ‘접촉지대’를 만들어낼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 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민족유산보호법, 씨름, 접촉지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82).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1. 들어가는 말

2018년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공화국 포트루이스(Port Louis, Mauritius)에서 열린 ‘제13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Ssirum/Ssireum), 이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남과 북의 공동 등재를 결정하였다. ‘씨름’은 남과<sup>1)</sup> 북이<sup>2)</sup> 각각 등재신청을 한 것으로 개별 등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의지와 유네스코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긴급안건으로 ‘씨름’을 공동 등재할 것을 논의하여 24개 위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공동등재가 결정되었다.<sup>3)</sup>

북한이 2008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남과 북의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유사성이 있는 유산

---

1) 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 Ssirum(Korean 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UNESCO,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lis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lowing unprecedented merged application from both Koreas,” <https://en.unesco.org/news/traditional-korean-wrestling-listed-intangible-cultural-heritage-following-unprecedented-merged>(검색일: 2019년 4월 30일); 문화재청, 2018년 12월 3일 보도자료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폐막,”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123&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제13차+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간위원회+폐막&sdate=&edate=&category=&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123&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제13차+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간위원회+폐막&sdate=&edate=&category=&mn=NS_01_02)(검색일: 2019년 4월 30일).

을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2018년에 와서야 ‘씨름’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남과 북의 접촉이 많아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 북한이 1998년 ‘세계유산협약(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 통한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고구려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과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남과 북이 만나는 장을 확대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sup>4)</sup>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개성 만월대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한정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접촉 시대로 볼 때,<sup>5)</sup> 영토적 측면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며 비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무형유산 분야에서 남과 북의 접촉 기회가 발생한 요인을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법과 북한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남과 북의 새로운 ‘접촉시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4) 2005년에 있었던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공감하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5)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시대』(서울: 사회평론, 2016), 18쪽.

## 2.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적 보호

###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영향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11조를 통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6)</sup> 물론,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개방적 문서로서 조항 대부분은 비규범적인 용어’로 되어있으며, 협약을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다.<sup>7)</sup> 하지만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당국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하며 법적 보호 및 무형문화유산목록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 역시 2008년 11월 21일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까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08년 ‘세계유산(The World Heritage) 신청 후 반려된 ‘개성역 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의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유물보호법」을 수정·보충하는<sup>8)</sup> 등 유형유산 분야에 역

---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기본문서』, 209쪽, <https://www.ichcap.org/유네스코와-무형문화유산/?lang=ko>(검색일: 2019년 4월 29일).

7)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목록 작성』, 70쪽, <https://www.ichcap.org/유네스코와-무형문화유산/?lang=ko>(검색일: 2019년 4월 29일).

8) 「문화유물보호법」은 2009년에 전폭적으로 수정·보충되었고, 2011년 일부 수정되었다.

<표 1> 북한의 국가비물질유산목록 내용과 유네스코 권고 내용

북한의 국가비물질유산목록 내용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 작성에 포함될 내용
<p>1. 비물질문화유산요소의 확증</p> <p>1.1 해당공동체가 사용하는 요소 이름</p> <p>1.2 요소의 간단한 자료적인 명칭(해당 비물질문화유산령역에 대한 지적 포함)</p> <p>1.3 해당공동체(들)</p> <p>1.4 요소의 수행과 연관된 물리적인 장소(들)/분포, 수행빈도</p> <p>1.5 요소에 대한 설명</p> <p>1.6 대상의 역사적 유래와 어원, 현재까지의 수행정형</p> <p>1.7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상의 여러 변종들</p> <p>1.8 대상에 있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p>	<p>1. 종목의 정의</p> <p>1.1. 유산의 명칭(관련 공동체나 집단이 사용하는 명칭)</p> <p>1.2. 간략하고, 최대한 함축적인 명칭(영역 구분 포함)</p> <p>1.3. 관련 공동체</p> <p>1.4. 유산의 소재지</p> <p>1.5. 간략한 설명</p>
<p>2. 비물질문화유산요소의 특성</p> <p>2.1 요소의 실행과 활동에 직접연관된 활동자(들)/수행자(들) (이름, 나이, 성별, 직업부류 등 포함할 것)</p> <p>2.2 요소의 실행과 활동에 적게 연관되어있으나 그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달을 도모(예: 무대 및 의상준비, 훈련, 감독, 후원)하는 공동체 안의 기타 사람들</p> <p>2.3 해당 언어(들)</p> <p>2.4 대상의 수행이나 전달에 연관된 물질적요소</p> <p>2.5 요소의 수행과 전달에 연관된 비물질적요소(있는 경우)</p> <p>2.6 요소 혹은 그 측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있는 경우)</p> <p>2.7 공동체 안의 다른 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p> <p>2.8 유관기관들 (공동체기관, 비정부기구들, 있는 경우 기타)</p>	<p>2. 종목의 특성</p> <p>2.1. 유형요소</p> <p>2.2. 무형요소</p> <p>2.3. 관련 언어, 등록부, 스피치 레벨 (speech level)</p> <p>2.4. 유래</p>

<p>3. 비물질문화유산의 상태: 생명력</p> <p>3.1 관련 공동체(들) 내에서 요소의 지속적 수행에 대한 위협(있는 경우)</p> <p>3.2 관련 공동체(들) 내에서 요소의 지속적 전달에 대한 위협(있는 경우)</p> <p>3.3 요소와 연관된 물질적요소와 자원의 지속적리용에 대한 위협(있는 경우)</p> <p>3.4 요소와 연관된 기타 비물질요소의 생명력</p> <p>3.5 요소에 대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며 미래의 수행과 전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해지고 있는 (있는경우)보호나 기타 대책</p>	<p>3. 종목 관련 개인 및 기관</p> <p>3.1. 실연자/공연자(이름,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직업)</p> <p>3.2. 기타 참여자(보유자, 관리자)</p> <p>3.3. 종목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관습</p> <p>3.4. 전승 수단</p> <p>3.5. 관련 기관 (비정부기구 등)</p>
<p>4. 자료의 제한과 승인</p> <p>4.1 자료를 만드는 데 관련된 해당공동체들의 참가와 동의서</p> <p>4.2 자료리용(혹은 그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제한(있는 경우)</p> <p>4.3 자료제공자(들): 이름과 직위 혹은 소속</p> <p>4.4 자료수집날자(들)와 장소(들)</p>	<p>4. 종목의 현황 - 생존능력</p> <p>4.1. 연행 위협 요소</p> <p>4.2. 전승 위협 요소</p> <p>4.3. 관련 유형적 요소와 자원의 이용가능성</p> <p>4.4. 관련 유·무형적 요소의 생존능력</p> <p>4.5. 보호 조치</p>
<p>5. 비물질문화유산요소와 관련된 참고자료(있는 경우)</p> <p>5.1 도서(있는 경우)</p> <p>5.2 문헌고나 박물관, 개인수집품들에 있는 음영상자료, 록화자료 등(있는 경우)</p> <p>5.3 문헌고나 박물관 개인수집품들에 있는 기록자료와 대상물들(있는 경우)</p>	<p>5.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p> <p>5.1.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p> <p>5.2. 목록 수록 자료에 대한 규제</p> <p>5.3. 출처(이름, 지위, 기관)</p> <p>5.4. 자료 수집 일시 및 장소</p> <p>5.5. 자료 등록 일시</p> <p>5.6. 목록 편찬 주체</p>
<p>6. 목록작성자료</p> <p>6.1 항목들에 내용을 기입한 사람(들)</p> <p>6.2 해당공동체의 동의 증명 (가) 요소를 목록에 등록하는 데 대한 것 (나) 목록에 넣어야 할 자료에 대한 것</p> <p>6.3 목록에 자료를 기입한 날자</p> <p>6.4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단위</p>	<p>6. 문헌, 음악 목록, 시청각자료, 아카이브 관련 목록</p>

자료: “국가비물질유산목록: 조선씨름,” UNESCO, “State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sirume”;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 작성에 포함될 내용,”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목록 작성』, 81쪽.

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sup>9)</sup>

북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관리는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된 「문화유산보호법」부터이다. 구법(舊法)인 2009년 대폭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법적 보호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2년 8월 13일에 ‘아리랑’이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에 첫 유산으로 선정되었다.<sup>10)</sup>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김치담그기풍습’과 ‘씨름’의 ‘국가비물질유산목록’의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은 유네스코 권고내용인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목록 작성에 포함될 내용’과<sup>11)</sup>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다만, 최고지도자의 업적과 관리를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날짜 등이 포함되었고, ‘유산의 명칭’을 ‘해당공동체가 사용하는 요소의 이름’처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6개의 항목별 내용은 비물질유산에 대해 개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물질유산의 특징을 기술한다. 그 순서는 유네스코의 권고 내용과 다르지만 비물질유산의 전승과 관련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해 기록하고, 전승에 위협이 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는 항목 역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고자료와 관련 목록을 작성하는 부분은 거의 일치한다

---

9)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이코모스 권고안’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1년 2월 14일에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였다. ICOMOS, *2013 Evaluations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Paris: ICOMOS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3), p.140.

10) UNESCO,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CH inventory,” <https://ich.unesco.org/en/RL/arirang-folk-song-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00914>(검색일: 2019년 4월 29일).

1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지정과 목록 작성』, 81쪽.

고 할 수 있다.

## 2)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과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은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의 채택으로 단 4년 만에 폐기되었다. 2015년의 「민족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보호법」을 기초로 2014년 10월 24일에 발표된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sup>12)</sup> 반영하여 과학화와 국제기구와의 교류, 문화유산관리의 체계성 요구, 위법행위 등 범조문을 수정하였다.<sup>13)</sup>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까지 포괄한 ‘민족유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후 「민족유산보호법」은 2019년 1월에 수정·보충되었고, 법의 전문은 현재까지 공개되어있지 않으나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3일에 걸친 ‘법규해설’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었다.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을 통해 ‘민족유산’이라는 개념 제시를 넘어 진정한 하나의 법체계에서 민족유산이 관리되게 되었다.<sup>14)</sup>

이 법으로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은 법적 명칭이 ‘비물질문화유산’에

---

12)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13) 남보라, “북한 문화유산 정책의 동향,”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문화정치』(2019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춘계 공동학술회의, 2019.3.28), 46~47쪽.

14) “법규해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4),”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3일.



<표 2>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범주 변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구전전통과 표현
나. 공연 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다.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 레식과 명절행사	사회적관습과 레식 및 명절 행사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자연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과 관습
마. 전통 기술	전통적 수공예술, 의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같은것	전통수공예

주: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자에 따르면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관습, 레식 및 명절행사, 자연,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기술과 같은 것이 속한다’고 하여 일부 추가된 부분이 확인된다. ‘전통예술’이 ‘전통예술과 의술’로, ‘전통수공예’에서 ‘전통수공예기술’로의 변화가 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 있었던 의학이라는 부분을 ‘의술’로 살린 것으로 보이며, ‘전통수공예’에서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통수공예기술’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서 ‘비물질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법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내용과 유사한 표현으로 계속 정의하고 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와<sup>15)</sup>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2조(민족유산의 정의)’의<sup>16)</sup> 표현이 다르기는 하나 다루고 있는 범주는 모두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2조의 5가지 분야와 같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은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한다. ‘민족유산

15) 법률출판사 위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52쪽.

16) 법률출판사 위음, 위의 책, 367쪽.

보호법」 제21조(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에 따르면 ‘민족유산심의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대상에 따라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또는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의 역사적시기와 보호가치, 보호전망 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7)</sup>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항목을 따로 두어 그 기능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위원회는 유산의 심의 평가를 담당하며 유산의 등록 및 폐기를 심의한다. 이는 남한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북한의 ‘민족유산’ 발굴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민족유산발굴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관’만 할 수 있지만, ‘비물질민족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시민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11조 당사국의 역할’인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한다”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에 채택된 「민족유산보호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유형유산인

17) 법률출판사 위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중보판)』, 369~370쪽.

18)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commission2.jsp&mn=NS\\_03\\_04\\_02](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commission2.jsp&mn=NS_03_04_02)(검색일: 2019년 4월 29일).

‘물질유산’의 관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 내에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인 보호관리 및 계승과 관련한 조문은 ‘제42조 비물질유산의 보호’와<sup>19)</sup> ‘제43조 비물질유산의 마크’로<sup>20)</sup> 유형유산 분야와 비교하여볼 때, 상대적으로 조문의 비중이 작았다.

하지만 2019년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에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조선』 2019년 2월 2일 ‘법규해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에서 확인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물질유산의 전승자와 전승’에 대한 부분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보호(safeguarding)’로 고정되지 않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혹은 전달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sup>21)</sup> 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를 우대하며 그의 공로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하며 비물질유산보유자는 비물질유산을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수 있도록 전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 민족체육, 민속놀이, 민족음식, 조선옷, 전통수공예기술, 우리 말과 인사

---

19) 「민족유산보호법」 제42조(비물질유산의 보호)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법률출판사 위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372쪽.

20) 「민족유산보호법」 제43조(비물질유산의 마크) 비물질유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를 정한다. 마크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의 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출판사 위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증보판)』, 372~373쪽.

2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 열 한가지 주요 쟁점』, 61쪽, <https://www.ichcap.org/유네스코와-무형문화유산/?lang=ko>(검색일: 2019년 4월 29일).

법, 고려의학, 민족적건축형식같은 비물질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비물질유산을 널리 보급하여야 하며 비물질유산과 관련한 축전, 전시회, 전람회 같은것을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22)</sup>

이처럼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적관리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민족유산보호법」 제25조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에서 명시하고 있듯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함께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결정은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영향은 개별 유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산이 '씨름'이다. 다음 장에서 '씨름'을 중심으로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북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변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별 유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북한에서 2016년 정보보완을 이유로 등재

---

22) "법규해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 『민주조선』, 2019년 2월 2일.

가 좌절된 이후 다시 신청하여 남한과 함께 공동 등재된 사례로 2차례 제출된 등재서류에 북한 당국의 인식 변화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5년에 ‘씨름’ 등재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부족한 부분은 씨름을 무형문화유산이 아닌 스포츠로 설명하였고, 여성의 참여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등재신청서상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기여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의 보호조치는 포함되었으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며 젠더(gender) 측면도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3)</sup>

이 점은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유산이며 공동체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관습, 축제 및 공연예술은 관련 공동체가 가진 성역할 및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과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성역할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동체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거나 기존의 성규범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sup>24)</sup>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성평등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성 정체성 형성을 분리해서 생각하

---

2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venth session, 28 November to 2 December 2016: ‘Item 10.b of the Provisional Agenda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p.14~15, <https://ich.unesco.org/en/11com>(검색일: 2019년 4월 30일).

24)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 4쪽, <https://www.ichcap.org/유네스코와-무형문화유산/?lang=ko>(검색일: 2019년 4월 29일).

지 않음으로<sup>25)</sup> 남성의 스포츠로 기술된 씨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2015년과<sup>26)</sup> 2017년<sup>27)</sup> 북한이 제출한 ‘씨름’의 ‘비물질유산목록(ICH inventory)’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내용이 변화되었다. 2015년에 제출한 내용에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에 제출한 ‘비물질유산목록’에 서술된 여성의 모습은 씨름하는 남성을 응원하는 ‘응원자’이자 후원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편이나 자식이 우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승자와 결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2. 대상을 관리하는 집단 또는 개인(들)’에 언급되었다. ‘11. 사회문화적기능과 생명력’에서는 ‘유산의 적극적인 수행은 남녀평등, 여성존중을 적극 추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up>28)</sup>

북한이 ‘비물질유산목록’을 토대로 작성한 2017년의 등재신청서에는 씨름에 대해서 ‘모든 조선인(All Koreans)이 사랑하며 많은 조선남성

---

25)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 3쪽.

26) “국가비물질유산목록-조선씨름,” [https://ich.unesco.org/en/10b-representative-list-00891?select\\_country=00055#table\\_cand](https://ich.unesco.org/en/10b-representative-list-00891?select_country=00055#table_cand)(검색일: 2019년 4월 30일).

27) “국가비물질문화유산목록 제8호(발취본),” [https://ich.unesco.org/en/files-2018-under-process-00913?select\\_country=00055&select\\_type=all#table\\_cand](https://ich.unesco.org/en/files-2018-under-process-00913?select_country=00055&select_type=all#table_cand)(검색일: 2019년 4월 30일).

28) 녀성들은 자기집단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성원들과 응원자들을 위하여 갖가지 민족음식과 응원도구, 복장들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전통적인 민족의상을 차려입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데 유산의 수행과정에 가한 모든 사람들은 씨름전통을 이어가는 데 자기들의 소박한 지성을 다해가는 녀성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경의를 표시한다. 씨름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 한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목록 제8호(발취본),” 6쪽.

(many Korean men)은 수련생이자 전승자'라고 하였고, '비물질유산목록'과 동일하게 여성이 씨름의 제정 및 전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sup>29)</sup> 또한, 2015년에 제출된 씨름의 등재신청서에는<sup>30)</sup> 씨름이 남성의 스포츠로 서술되었으며, 여성의 참여에 관한 부분이 '1. 요소의 식별과 정의' 중 '(iv)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에만 나타나 있다. 대회를 위해 훈련하는 기간 여성은 맛있는 음식으로 선수들을 즐겁게 하며, 이것은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을 증진할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여 여성은 씨름에 있어 주변인으로 그려진다.<sup>31)</sup>

다시 2017년 수정된 등재신청서를 살펴보면 '비물질유산목록'에서 등장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Socialist Women's Union of Korea)'이 'C. 해당 지역 사회, 단체 또는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이름'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으며,<sup>32)</sup> 그 역할을 '3.b. 보호 조치 제안'에서 제시한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은 씨름 경기에 있어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씨름을 보호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씨름 경기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국민

---

29) "Nomination file No. 01361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5,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korean-wrestling-ssirum-01533>(검색일: 2019년 4월 30일).

30) "Nomination file no. 01160 for inscription in 2016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5, [https://ich.unesco.org/en/10b-representative-list-00891?select\\_country=00055#table\\_cand](https://ich.unesco.org/en/10b-representative-list-00891?select_country=00055#table_cand)(검색일: 2019년 4월 30일).

31) "Nomination file no. 01160 for inscription in 2016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5.

32) "Nomination file No. 01361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2.

체육 경기, 특히 씨름을 배우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장려한다.<sup>33)</sup> 또한, ‘1. 요소의 식별과 정의’ 중 ‘(ii) 유산의 보유자 및 전승자는 누구인가? 유산의 실천과 전승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범주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통해 여성은 씨름의 제정 및 전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4)</sup> 또한, 2015년 등재신청서에는 남성의 이름만 있었지만 2017년에는 여성의 실명을 밝히고 있다.<sup>35)</sup>

2017년 남한이 ‘씨름’의 등재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씨름은 한국인이 즐기는 민속 예능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sup>36)</sup> 다만, 씨름 경기가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서술하며, ‘여성과 아이, 노인,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심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작성된 점에서 남과 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

33) “Nomination file No. 01361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11.

34) “Nomination file No. 01361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5.

35) Ms. Rim Jong Ae and Ms. Kye Son Suk from the women’s union and many other women hold it as their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enactment of the element to encourage and foster the tradition in their regions(“Nomination file No. 01361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5.).

36) “Nomination file No. 01280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2, <https://ich.unesco.org/en/RL/traditional-korean-wrestling-ssirum-ssireum-01533>(검색일: 2019년 4월 30일).

37) “Nomination file No. 01280 for inscription in 2018 on the Representative List



이처럼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이는 변화를 북한 내의 씨름을 소개하는 글이나 신문기사 속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북한 내에서 씨름과 관련하여 보이는 글은 대부분 ‘대황소상 전국 민족씨경기’에 대한 보도와 설명이며 씨름의 유래와 유구성, 씨름의 특징 등을 풀어내는 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씨름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대부분 글이 보도와 유산에 대한 유래와 최고지도자의 영도, 유산의 독창성과 뛰어난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외부에 제출하는 문서만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2012년 11월 8일 국가비물질유산 제5호로 정했던 ‘치마저고리차림풍습’은 ‘조선옷차림풍습’으로 바뀌었다. 2012년 이전부터 우리의 한복을 북한은 ‘조선옷’으로 불러왔지만 처음 유산을 등록하면서 치마저고리차림풍습이라고 하여 여성의 옷으로 부각하였다. 여전히 여성들이 많이 입는 민족옷이라는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전국조선옷전시회’의 보도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의 옷, 아이들과 노인의 옷에서 현재는 민족 모두의 옷이 되었다. 2015년부터 조선마지저고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한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도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시회에 출품한 결혼식 옷도 기존엔 여성옷만 등장하였다면 현재는 여성옷과 남성옷 모두를 소개하고 있다.<sup>38)</sup>

---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6.

38) 북한의 결혼식 의복에 대한 내용은 『민족문화유산』, 2007년 2호의 “민족적전통을 계승한 결혼식 옷차림과 몸단장”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결혼식옷차림을 민족적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미감과

물론 이런 변화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4년 김정은의 “민족유산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강조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하여야 합니다’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도 별려나아가야 합니다’에 맞춘 사업들이 모두 유네스코와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과학화를 위하여 유산들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해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벌리는 것’은<sup>39)</sup> 김정은 집권 이후 문화유산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비물질유산의 경우 자료기지화 작업을 인류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등재신청서의 정교화를 위해서 98,000달러의 지원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부터 꾸준

---

기호에 맞게 하고있다. 잔치날 신랑은 재건옷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다. 이때 옷색같은 자기의 취미와 기호, 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택한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샤쓰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결혼식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신부는 누구라 할것없이 아름답고 세련된 감을 주는 조선옷차림을 한다라고 적고 있다. 반면, 2015년 11월 26일자 『로동신문』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평양민속공원 강사 리명옥동무는 올해에 들어와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하고 이곳을 찾는 신랑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2015년 있었던 ‘제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 ‘대체로 조선치마저고리가 많이 전시되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남자들의 기본 민족옷차림인 바지저고리와 조끼, 두루마기 같은 여러가지 민족옷들이 많이 출품되어 인기를 모았던것이다’라고 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조선옷에 대한 북한 내의 인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사업,” 『민족유산』, 제1호 (2019), 19쪽.

히 유네스코와 교류를 통해 역량강화 훈련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0)</sup>

#### 4. 나가는 말

북한은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이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위해 법적 보호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 작성에 들어갔다. 법의 내용이나 등재관련 서류를 살펴볼 때,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만방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sup>41)</sup> 한편,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당사국의 자유로운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추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보호, 성평등 등을 북한이 충족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유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2년 ‘조선민요 《아리랑》’과

---

40) 유네스코 북경사무소를 통해 2011년 ‘정부 대상 보호 인식 제고 워크숍’, 2013년에는 ‘2003년 협약이행을 위한 훈련워크숍’이 있었으며,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워크숍’이 있었다. 2018년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추천문건작성 훈련워크숍’이 진행되었다.

41)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245쪽.

2013년에는 ‘김치담그기풍습’을 등재신청하였다.<sup>42)</sup> 북한은 지금까지 총 3개의 유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황에서 2019년은 ‘조선옷차림풍습(Custom of Korean costu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제출하였다.<sup>43)</sup> 이처럼 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유사한 유산을 두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누가 먼저 등재하느냐는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회적 결속을 돕고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유산 등재를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씨름’의 공동등재를 통해 종식될 기회가 찾아왔다. ‘씨름’은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함께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남과 북의 용어조차 ‘무형문화재’(남)와 ‘비물질유산’(북)처럼 서로 다르더라도,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 법적 보호는 국제적 약속인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남한도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법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

42) 2012년 남한이 ‘아리랑’, 2013년 ‘김치와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 북한의 ‘조선민요 《아리랑》’은 2014년에, ‘김치담그기풍습’이 2015년에 등재되었다.

43) ‘조선옷차림풍습’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에서 ‘Backlog nomination(s)’였던 것이 ‘On-going nomination(s)’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등재신청서 제출 마감일인 2019년 3월 31일 이후 조정되었으며 2020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심사받게 될 것이다.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sup>44)</sup>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남과 북의 법·제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런 점은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심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있으므로 함께 접점을 만들어나가는 데 용이하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남과 북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다양한 ‘접촉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문화유산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북한 영토 내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공간적 제약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의 제약을 가져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경우 2015년 6개월이라는 장기조사와 함께 개성-서울 남북공동 전시회를 통해 천여명 정도 방문이 가능하였을 뿐 대부분 조사에서는 50명에서 100명 남짓의 사람만 현장을 오고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형유산처럼 특정한 공간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승과 관련하여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면 어느 공간이라도 가

---

44) 법제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52&ancYd=20150327&ancNo=13248&efYd=201603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 2019년 5월 1일).

능하여, 직접 만나는 공간이 없더라도 녹취·촬영 등 기록한 자료 등을 통해 영토관계를 넘어선 초보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협약』이라는 국제적 구심점을 통해 국제기구를 통한 접촉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전승관이나 혹은 경기장 등의 건립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역사의 산물인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남과 북의 새로운 접촉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 접수: 6월 24일 / 수정: 11월 20일 / 채택: 11월 2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년 10월 24일』(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법률출판사 위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평양: 법률출판사, 2016).

#### 2) 논문

리재선, “민족적전통을 계승한 결혼식 옷차림과 몸단장,” 『민족문화유산』, 제2호(2007), 46~47쪽.

최명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데서 나서는 사업,” 『민족유산』, 제1호(2019), 19~20쪽.

#### 3) 신문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 『로동신문』, 2015년 11월 26일.

“법규해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4),”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3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북한의 무형유산과 남북 교류 협력 방안』(2019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2019. 6.14).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 잇기 남북의 접촉지대』(서울: 사회평론, 2016).

## 2) 논문

남보라, “북한 문화유산 정책의 동향,”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문화정치』(2019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춘계 공동학술회의, 2019.3.28), 44~54쪽.

## 3) 기타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http://www.cha.go.kr).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 [www.ichcap.org](http://www.ichcap.org).

## 3. 국외 자료

### 1) 기타 자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s://www.ichcap.org/>.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



Searching for a New ‘Contact Zo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sireum’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e, Woo 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am, Bo-Ra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ince North Korea join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8, within a decade South and North Korea jointly listed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 / Ssireum)’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Internationally, South and North Korea seem to be competing; but through the joint listing of ‘Ssireum’ as ICH, the two demonstrated the ability to search for commonality to rescue them from their competition and still maintain their identity.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amendment of the Law on ICH in North Korea on the change of perception through the documents related to ‘Ssireum’ submitted for registration in 2015 and 201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ery important in the

inter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it closely relates to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ble to create various ‘contact zones’ through this convention as a centerpiece.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North Kore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Ssireum, contact zones